|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1호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서비스에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재정부의 동의를 받아, 국가세무총국이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지금 발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잠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7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공고한다. 첨부문건:1.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국제운수/홍콩-마카오-대만 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2. 항공 국제운수 수입결산명세서 신고명세표3. 철도 국제여객 수입문건 신고명세표4.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우주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5. 우주운수서비스 제공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6.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연구개발서비스/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7. 경외단위에 연구개발/설계서비스 제공한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8. 대외무역기업 외부구매 과세서비스(연구개발/설계서비스) 수출명세 신고표9.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국가세무총국2014년 2월 8일**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의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시행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자는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되어 증치세 일반 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내 단위와 개인을 의미한다. 증치세를 일괄 정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받아 증치세를 일괄 정산 납부하는 총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적용범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출발 또는 도착지가 경외인 송장, 선하증권 또는 승차권에 대응되는 각 비행 구간 또는 철도/도로 구간의 운수서비스는 국제운수서비스에 해당한다.출발 또는 도착지가 홍콩, 마카오, 대만인 송장, 선하증권 또는 승차권에 대응되는 각 비행구간 또는 철도/도로 구간의 운수서비스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해당한다.경내에서 출발한 여객 또는 화물이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나 장소에서 출발한 여객 또는 화물이 국내의 기타 지역 또는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이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이나 장소에 있는 단위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 설계서비스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퇴(면)세 방법에는 면저퇴세 방법과 면퇴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계산공식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 의 유관 수출화물 노무 퇴(면)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화물과 노무를 동시에 수출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여 결산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면저퇴세를 계산한다. 세무기관은 심사 비준과정에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수출화물 노무 면저퇴세액의 비율에 따라 퇴세액과 면저세액을 구분해야 한다.**제5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퇴세율은 대응하는 서비스를 경내 단위에 제공할 때 적용되는 증치세 세율이다. **제6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퇴(면)세 세액계산 근거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1)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퇴(면)세 세액계산 근거1. 철도운수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철도합작조직의 결산규칙에 따라 결산 한 이후의 실제 운수수입2. 철도운수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철도운수 수입 결산방법에 따라 “출발역” 또는 “도착역(국)”명칭에 “경”자가 포함된 전표에 명시된 운수비용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국제 연합운송 잡비 결산 이후의 실제 운수수입3. 항공운수방식으로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고, 국제운수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수 과정의 각 비행구간에서 다수의 운송인이 운송을 한 경우, 중국항공결산유한책임회사가 결산을 완료한 후의 실제수입. 국제운수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수과정의 각 비행구간에서 단일한 운송인이 운송을 한 경우에는 항공운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4. 기타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수입(2) 면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퇴(면)세 세액계산 근거는 과세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증치세 전용계산서 또는 세액납부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세수납세증빙에 명시된 금액이다. **제7조**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8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한 후에 비로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제공된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가 수출 퇴(면)세 자격인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한 후에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요구내용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1) <수출퇴(면)세 자격인증 신청표> 및 전자데이터 작성 보고<수출퇴(면)세 자격인증 신청표> 중 “퇴세 은행 계좌번호”에는 반드시 세무등기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 은행 계좌 중 하나를 기입해야 한다. (2) 제공된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종류에 따라, 아래 대응자료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1. 국제운수서비스 제공. 수로운수방식의 경우 <국제선박운수경영허가증> 제출한다. 항공운수방식의 경우 경영범위에 “국제항공 여객/화물/우편물 운수업무”가 포함된 <공공항공운수기업 경영허가증> 또는 경영범위에 “공무비행”이 포함된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제출한다. 도로운수방식의 경우 경영범위에 “국제운수”가 포함된 <도로운수경영허가증>과 <국제차량운수통행허가증>을 제출한다. 철도운수방식의 경우 경영범위에 “허가경영항목: 철도 여객/화물 운수”가 포함된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기타 철도 여객 화물 운수서비스 제공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우주운수서비스의 경우, 경영범위에 “상업위성발사서비스”가 포함된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기타 상업위성 발사서비스 제공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2.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 제공. 도로운수방식의 대륙-홍콩, 마카오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로운수경영허가증>과 <도로운수증>을 소지한 직통 홍콩-마카오 운수차량에 대한 물권증명을 제출한다. 수로운수방식의 대륙-홍콩, 마카오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노선 운행허가를 취득한 선박에 대한 물권 증명을 제출한다. 수로운수방식의 대륙-대만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만 해협 양안간 수로운수허가증>과 <대만 해협 양안간 선박 운영증>을 소지한 선박에 대한 물권 증명을 제출한다. 항공운수방식으로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범위에 “국제, 국내(홍콩 및 마카오 포함) 항공 여객 화물 우편물 운수업무”가 포함된 <공공항공운수기업 경영허가증> 또는 경영범위에 “공무여행”이 포함된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제출한다. 철도운수방식으로 대륙-홍콩간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범위에 “허가경영항목: 철도 여객 화물 운수”가 포함된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철도 여객 화물 운수서비스 제공 자격을 구비한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3. 항해 용선(voyage charter), 기간 용선(time charter), 항공기 임대(wet lease)의 방식으로 교통운송수단을 임대하여 국제운수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항해용선(voyage charter), 기간 용선(time charter), 항공기 임대(wet lease)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대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등기증>을 제공해야 한다. (3)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화물 및 노무를 수출하였으나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상술한 자료와 함께 비안등기전용인감이 날인된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송발화인 통관 등록등기증서> 원본과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 완료한 수출기업이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출퇴(면)세 자격인증 변경 신청표> 및 전자데이터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제9조에서 열거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퇴(면)세 자격인증 변경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제11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에 따라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퇴(면)세 청산을 진행하고, 세금 결산과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제12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무에서 판매수입을 처리한 다음달(분기별로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첫번째 달. 이하 동일)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 납세 및 퇴(면)세 관련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유관 증빙을 수령 완료한 후에 재무에서 판매수입을 처리한 다음달부터 다음해 4월 30일 이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한을 경과하여 퇴(면)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더 이상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규정된 기한 내에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하여,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구내용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 면저퇴세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1) <면저퇴세 신고총괄표> 및 부속표의 작성 보고(2) 당기 <증치세납세신고표> 제출(3) 면저퇴세 정식신고 전자데이터 제출(4)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받아 전자데이터를 제출하고, 원시증빙은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할 수 있음)(5) 제공된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자료 증빙을 제출한다.1. 국제운수서비스, 홍콩-마카오-대만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국제운수/홍콩-마카오-대만 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문건1)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또한 아래에서 열거하는 원시증빙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수로운수, 항공운수, 도로운수 방식으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화물, 여객 선적명세서 또는 기타 수입의 원시 구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영수증 증빙. 항공운수방식으로 국제운수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를 각 노선별 복수 운송주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이와 함께 <항공국제운수 수입결산명세서 신고명세표>(첨부2)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철도운수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의 국제여객연합운송 영수증, 철도합작조직 결산문건 및 <철도 국제여객 수입문건 신고명세표>(첨부3).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철도 수입자금 결산기구가 발급한 <국제철도 화물운송 수입결산 통지단>. 발송지 철도운수기업은 국제철도연합운송 송장과 “출발역” 또는 “도착역(국)” 명칭에 “경”자가 포함된 전표를 제출해야 한다.3) 항해 용선, 기간 용선,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방식으로 교통운송수단을 임대하여 국제운수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항해 용선, 기간 용선, 항공기 임대에 관한 계약 또는 협의문건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경외단위 및 개인에게 기간 용선, 항공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퇴(면)세를 신청하며 제1)항의 원시증빙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상술한 1), 2)항 원시증빙(<항공 국제운수 수입결산명세서 신고명세표>, <철도 국제여객 수입문건 신고명세표>는 포함하지 않음)을 전자데이터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시증빙은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2. 우주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우주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4)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료와 원시증빙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체결된 우주운수서비스 제공 계약서2) 우주운수서비스 계약 체결단위에서 취득한 수입에 대한 대금영수 증빙3) <우주운수서비스 제공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첨부5)3. 대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연구개발 서비스/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6)을 작성 보고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료와 원시증빙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수입에 대응하는 <기술수출계약등기증> 사본2) 경외단위와 체결한 연구개발, 설계계약서3)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에서 취득한 수입에 대한 대금영수 증빙4) <경외단위에 연구개발/설계서비스 제공한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첨부7) (6) 주관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및 증빙제14조 면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 면퇴세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1)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 일괄신고표> 작성 보고(2) <대외무역기업 외부구매 과세서비스 (연구개발/설계서비스) 수출명세 신고표>(첨부8) 작성보고(3) 외부구매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한 상황에서의 <대외기업 수출퇴세 상품입하 명세신고표> 작성(4) 다음의 원시증빙을 제출한다. 1)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2) 경내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3)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세금 납부 후 취득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납부증빙을 제출4) 제13조 제(5)항 제3에서 열거한 자료 및 원시증빙의 자료와 사본**제15조** 주관 세무기관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퇴(면)세 신고를 수리한 후, 아래에서 열거하는 내용에 대하여 인공심사를 진행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을 사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면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매입항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교차검사, 정보검사를 사용하여 수출퇴세를 심사 확인한다. 심사확인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기업의 매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대한 서신 발송 조사 또는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사항에서 추출한 약간의 신고기록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심사 확인한다. 1. 신고된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가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2. 추출된 신고기록에서 신고한 과세서비스 수입이 해당 신고기록과 대응하는 화물 또는 여객 선적목록 상에 기재된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 수입보다 적거나 동일한 지의 여부3. 기간 용선, 항해 용선 및 항공기 임대 방식으로 교통운송수단을 임대하여 국제운수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 용선, 항해 용선 및 항공기 임대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중점적으로 심사 확인하며, 퇴(면)세 신고를 한 기업이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 확인한다. 4. 철도운수방식으로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전표의 “출발역” 또는 “도착역(국)” 명칭에 “경”자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제공된 국제철도연합운송 송장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확인한다. (2) 대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1. 기업이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가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2.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경외단위인지의 여부3. 과세서비스 수입의 지출처가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인지의 여부4. 과세서비스 신고수입이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로부터 취득한 영수금액보다 적거나 동일한 지의 여부5. 대외무역기업의 외부구매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상술한 내용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퇴세를 신고한 매입세액이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와 대응하는지의 여부를 추가로 심사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스스로 개발한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수출함에 따라, 퇴(면)세 방법이 면퇴세에서 면저퇴세 방법으로 변경되는 대외무역기업의 경우, 신고된 퇴(면)세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수출화물, 노무 및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대외무역기업에 수출화물, 노무 및 서비스에 대응하는 매입증빙을 발송 보고하도록 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주관 세무기관이 대외무역기업이 제공한 매입증빙의 위조 또는 거짓내용을 심사 발견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주관 세무기관이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의 수출가격이 일방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위험을 방지하는 약간의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3]112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는 퇴(면)세 증빙자료가 완전하고 퇴(면)세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확인을 적시에 통과시켜야 하며, 퇴세 및 면저세액을 조정하고 퇴세자금은 중앙금고에서 통일적으로 지불한다. **제19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의 수출퇴세액을 편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퇴세를 편취한 기업의 수출퇴세 유관 문제 처리를 중지하는 것과 관한 통지>(국세발[2008]32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위험을 방지하는 약간의 증치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3]11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퇴세 정지기간에 발생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하여 퇴(면)세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여 면세 또는 규정에 따른 증치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첨부9)를 보고 발송하고 비안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비안 다음달 1일부터 36개월 간,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 퇴(면)세 신고를 할 수 없다.**제21조** 주관 세무기관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 퇴(면)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22조** 본 방법에서 요구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 발송하는 신고표 전자데이터는 모두 응수출퇴(면)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생성, 보고 발송되어야 한다. 수출퇴(면)세 신고시스템에서 정보의 생성, 보고발송 기능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 보고 발송해야 하는 전자데이터를 임시적으로 페이퍼 타입 자료로 보고 발송할 수 있다. 수출퇴(면)세 신고시스템은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무료 제공한다. **제23조** 본 방법에서 요구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동시 제출해야 하는 원본과 사본 자료의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하는 사본에 “원본과 일치”라는 문자표식을 명시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사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대조 확인한 후에 원본을 돌려주고 사본을 보관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에서 매출액을 처리한 일을 기준으로 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11号　　为落实营业税改征增值税有关应税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的政策规定，经商财政部同意，国家税务总局制定了《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管理办法》。现予以发布，自2014年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管理办法（暂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47号）同时废止。　　特此公告。附件：1.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国际运输/港澳台运输）免抵退税申报明细表　　2.航空国际运输收入清算账单申报明细表　　3.铁路国际客运收入清算函件申报明细表　　4.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航天运输）免抵退税申报明细表　　5.提供航天运输服务收讫营业款明细清单　　6.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研发服务/设计服务）免抵退税申报明细表　　7.向境外单位提供研发服务/设计服务收讫营业款明细清单　　8.外贸企业外购应税服务（研发服务/设计服务）出口明细申报表　　9.放弃适用增值税零税率声明　　　　　　　　　　　　　　　　　　　　　　　国家税务总局2014年2月8日**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管理办法**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的增值税一般纳税人提供适用增值税零税率的应税服务，实行增值税退（免）税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是指，提供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且认定为增值税一般纳税人，实行增值税一般计税方法的境内单位和个人。属于汇总缴纳增值税的，为经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批准的汇总缴纳增值税的总机构。　　**第三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适用范围按财政部、国家税务总局的规定执行。　　起点或终点在境外的运单、提单或客票所对应的各航段或路段的运输服务，属于国际运输服务。　　起点或终点在港澳台的运单、提单或客票所对应的各航段或路段的运输服务，属于港澳台运输服务。　　从境内载运旅客或货物至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从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载运旅客或货物至国内其他地区或者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以及向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及场所内单位提供的研发服务、设计服务，不属于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适用范围。　　**第四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办法包括免抵退税办法和免退税办法，具体办法及计算公式按《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12〕39号）有关出口货物劳务退（免）税的规定执行。　　实行免抵退税办法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如果同时出口货物劳务且未分别核算的，应一并计算免抵退税。税务机关在审批时，应按照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出口货物劳务免抵退税额的比例划分其退税额和免抵税额。　　**第五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退税率为对应服务提供给境内单位适用的增值税税率。　　**第六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退（免）税计税依据，按照下列规定确定：　　（一）实行免抵退税办法的退（免）税计税依据　　1.以铁路运输方式载运旅客的，为按照铁路合作组织清算规则清算后的实际运输收入；　　2.以铁路运输方式载运货物的，为按照铁路运输进款清算办法，对“发站”或“到站(局)”名称包含“境”字的货票上注明的运输费用以及直接相关的国际联运杂费清算后的实际运输收入；　　3.以航空运输方式载运货物或旅客的，如果国际运输或港澳台运输各航段由多个承运人承运的，为中国航空结算有限责任公司清算后的实际收入；如果国际运输或港澳台运输各航段由一个承运人承运的，为提供航空运输服务取得的收入；　　4.其他实行免抵退税办法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为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取得的收入。　　（二）实行免退税办法的退（免）税计税依据为购进应税服务的增值税专用发票或解缴税款的中华人民共和国税收缴款凭证上注明的金额。　　**第七条** 实行增值税退（免）税办法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第八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后，方可申报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如果提供的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发生在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前，在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后，可按规定申报退（免）税。　　**第九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应按照下列要求，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　　（一）填报《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及电子数据；　　《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中的“退税开户银行账号”，必须填写办理税务登记时向主管税务机关报备的银行账号之一。　　（二）根据所提供的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以下对应资料的原件及复印件：　　1.提供国际运输服务。以水路运输方式的，应提供《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以航空运输方式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国际航空客货邮运输业务”的《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或经营范围包括“公务飞行”的《通用航空经营许可证》；以公路运输方式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国际运输”的《道路运输经营许可证》和《国际汽车运输行车许可证》；以铁路运输方式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许可经营项目：铁路客货运输”的《企业法人营业执照》或其他具有提供铁路客货运输服务资质的证明材料；提供航天运输服务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商业卫星发射服务”的《企业法人营业执照》或其他具有提供商业卫星发射服务资质的证明材料。　　2.提供港澳台运输服务。以公路运输方式提供内地往返香港、澳门的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道路运输经营许可证》及持《道路运输证》的直通港澳运输车辆的物权证明；以水路运输方式提供内地往返香港、澳门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获得港澳线路运营许可船舶的物权证明；以水路运输方式提供大陆往返台湾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台湾海峡两岸间水路运输许可证》及持《台湾海峡两岸间船舶营运证》船舶的物权证明；以航空运输方式提供港澳台运输服务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国际、国内（含港澳）航空客货邮运输业务”的《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或者经营范围包括“公务飞行”的《通用航空经营许可证》；以铁路运输方式提供内地往返香港的交通运输服务的，应提供经营范围包括“许可经营项目：铁路客货运输”的《企业法人营业执照》或其他具有提供铁路客货运输服务资质的证明材料。　　3.采用程租、期租和湿租方式租赁交通运输工具用于国际运输服务和港澳台运输服务的，应提供程租、期租和湿租合同或协议。　　4.对外提供研发服务或设计服务的，应提供《技术出口合同登记证》。　　（三）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出口货物劳务，且未办理过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除提供上述资料外，还应提供加盖备案登记专用章的《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的原件及复印件。　　**第十条** 已办理过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出口企业，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应填报《出口退（免）税资格认定变更申请表》及电子数据，提供第九条所列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对应的资料，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变更。　　**第十一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按规定需变更增值税退（免）税办法的，主管税务机关应按照现行规定进行退（免）税清算，在结清税款后方可办理变更。　　**第十二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应在财务作销售收入次月（按季度进行增值税纳税申报的为次季度首月，下同）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纳税和退（免）税相关申报。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收齐有关凭证后，可于在财务作销售收入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退（免）税。逾期申报退（免）税的，主管税务机关不再受理。未在规定期限内申报退（免）税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应按规定缴纳增值税。　　**第十三条** 实行免抵退税办法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应按照下列要求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免抵退税申报：　　（一）填报《免抵退税申报汇总表》及其附表；　　（二）提供当期《增值税纳税申报表》；　　（三）提供免抵退税正式申报电子数据；　　（四）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所开具的发票（经主管税务机关认可，可只提供电子数据，原始凭证留存备查）；　　（五）根据所提供的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以下对应资料凭证：　　1.提供国际运输服务、港澳台运输服务的，需填报《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国际运输/港澳台运输）免抵退税申报明细表》（附件1），并提供下列原始凭证的原件及复印件：　　（1）以水路运输、航空运输、公路运输方式的，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载货、载客舱单或其他能够反映收入原始构成的单据凭证。以航空运输方式且国际运输和港澳台运输各航段由多个承运人承运的，还需提供《航空国际运输收入清算账单申报明细表》（附件2）。　　（2）以铁路运输方式的，客运的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国际客运联运票据、铁路合作组织清算函件及《铁路国际客运收入清算函件申报明细表》（附件3）；货运的提供铁路进款资金清算机构出具的《国际铁路货运进款清算通知单》，启运地的铁路运输企业还应提供国际铁路联运运单、以及“发站”或“到站（局）”名称包含“境”字的货票；　　（3）采用程租、期租、湿租服务方式租赁交通运输工具从事国际运输服务和港澳台运输服务的，还应提供程租、期租、湿租的合同或协议复印件。向境外单位和个人提供期租、湿租服务，按规定由出租方申报退（免）税的，可不提供第（1）项原始凭证。　　上述（1）、（2）项原始凭证（不包括《航空国际运输收入清算账单申报明细表》和《铁路国际客运收入清算函件申报明细表》），经主管税务机关批准，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可只提供电子数据，原始凭证留存备查。　　2.提供航天运输服务的，需填报《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航天运输）免抵退税申报明细表》（附件4），并提供下列资料及原始凭证的原件及复印件：　　（1）签订的提供航天运输服务的合同；　　（2）从与之签订航天运输服务合同的单位取得收入的收款凭证；　　（3）《提供航天运输服务收讫营业款明细清单》（附件5）。　　3.对外提供研发服务或设计服务的，需填报《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研发服务/设计服务）免抵退税申报明细表》（附件6），并提供下列资料及原始凭证的原件及复印件：　　（1）与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收入相对应的《技术出口合同登记证》复印件；　　（2）与境外单位签订的研发、设计合同；　　（3）从与之签订研发、设计合同的境外单位取得收入的收款凭证；　　（4）《向境外单位提供研发服务/设计服务收讫营业款明细清单》（附件7）。　　（六）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及凭证。　　**第十四条** 实行免退税办法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应按照下列要求向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免退税申报：　　（一）填报《外贸企业出口退税汇总申报表》；　　（二）填报《外贸企业外购应税服务（研发服务/设计服务）出口明细申报表》（附件8）；　　（三）填列外购对应的研发服务或设计服务取得增值税专用发票情况的《外贸企业出口退税进货明细申报表》；　　（四）提供以下原始凭证：　　1.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所开具的发票；　　2.从境内单位或者个人购进研发服务或设计服务出口的，提供应税服务提供方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　　3.从境外单位或者个人购进研发服务或设计服务出口的，提供取得的解缴税款的中华人民共和国税收缴款凭证；　　4.第十三条第（五）项第3目所列资料及原始凭证的原件及复印件。　　**第十五条** 主管税务机关受理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申报后，应对下列内容人工审核无误后，使用出口退税审核系统进行审核。对属于实行免退税办法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进项一律使用交叉稽核、协查信息审核出口退税。如果在审核中有疑问的，可对企业进项增值税专用发票进行发函调查或核查。　　（一）提供国际运输、港澳台运输的，应从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申报中抽取若干申报记录审核以下内容：　　1.所申报的国际运输、港澳台运输服务是否符合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规定；　　2.所抽取申报记录申报应税服务收入是否小于或等于该申报记录所对应的载货或载客舱单上记载的国际运输、港澳台运输服务收入；　　3.采用期租、程租和湿租方式租赁交通运输工具用于国际运输服务和港澳台运输服务的，重点审核期租、程租和湿租的合同或协议，审核申报退（免）税的企业是否符合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的规定；　　4.以铁路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港澳台运输服务的，重点审核提供的货票的“发站”或“到站（局）”名称是否包含“境”字，是否与提供国际铁路联运运单匹配。　　（二）对外提供研发服务或设计服务的，应审核以下内容：　　1.企业所申报的研发服务或设计服务是否符合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规定；　　2.研发、设计合同签订的对方是否为境外单位；　　3.应税服务收入的支付方是否为与之签订研发、设计合同的境外单位；　　4.申报应税服务收入是否小于或等于从与之签订研发、设计合同的境外单位取得的收款金额；　　5.外贸企业外购研发服务或设计服务出口的，除按照上述内容审核外，还应审核其申报退税的进项税额是否与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对应。　　**第十六条** 因出口自己开发的研发服务或设计服务，退（免）税办法由免退税改为免抵退税办法的外贸企业，如果申报的退（免）税异常增长，出口货物劳务及服务有非正常情况的，主管税务机关可要求外贸企业报送出口货物劳务及服务所对应的进项凭证，并按规定进行审核。主管税务机关如果审核发现外贸企业提供的进货凭证有伪造或内容不实的，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通知》（财税〔2012〕39号）等有关规定处理。　　**第十七条** 主管税务机关认为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的研发服务或设计服务出口价格偏高的，应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防范税收风险若干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3〕112号）第五条的规定处理。　　**第十八条** 经主管税务机关审核，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申报的退（免）税，如果凭证资料齐全、符合退（免）税规定的，主管税务机关应及时予以审核通过，办理退税和免抵调库，退税资金由中央金库统一支付。　　**第十九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税务机关应按《国家税务总局关于停止为骗取出口退税企业办理出口退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2008〕32号）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防范税收风险若干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3〕112号）的规定处理。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在停止退税期间发生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不得申报退（免）税，应按规定缴纳增值税。　　**第二十条** 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适用增值税零税率的应税服务，如果放弃适用增值税零税率，选择免税或按规定缴纳增值税的，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放弃适用增值税零税率声明》（附件9），办理备案手续。自备案次月1日起36个月内，该企业提供的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不得申报增值税退（免）税。　　**第二十一条** 主管税务机关应对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适用增值税零税率的退（免）税加强分析监控。　　**第二十二条** 本办法要求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向主管税务机关报送的申报表电子数据应均通过出口退（免）税申报系统生成、报送。在出口退（免）税申报系统信息生成、报送功能升级完成前，涉及需报送的电子数据，可暂报送纸质资料。　　出口退（免）税申报系统可从国家税务总局网站免费下载或由主管税务机关免费提供。　　**第二十三条** 本办法要求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向主管税务机关同时提供原件和复印件的资料，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的复印件上应注明“与原件相符”字样，并加盖企业公章。主管税务机关在核对复印件与原件相符后，将原件退回，留存复印件。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14年1月1日起施行，以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提供者提供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并在财务作销售收入的日期为准。 |